

2012년 임금동향과 2013년 전망

정 성 미*

I. 2012년 임금동향

1. 임금상승률 상승세로 반전

2012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5천 원으로 2011년에 비해 5.3% 상승하였다(표 1 참조). 2012년 임금상승률이 2011년(1.0%) 대비 4.3%p나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에는 상용직의 임금상승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1.0%, 5.8%의 상승률을 기록해 2011년 마이너스 증가와 대비된다. 또 정액급여는 5.5% 상승해 20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결과, 상용직 임금총액은 2011년 대비 5.3% 증가하여 2011년 마이너스 증가(-0.9%)에서 반등하였다(그림 1 참조). 반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은 2011년 15.1%에서 2012년 6.4%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2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4천 원으로 전년대비 3.5% 상승하였다. 이는 2011년의 4.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2010년의 5.2%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2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838천 원으로 전년대비 6.2% 상승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d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 원/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 근로자(5인 이상)	-	2,569	2,636	2,816	2,844	2,995	
	(상승률)	-	(-)	(2.6)	(6.8)	(1.0)	(5.3)	
	실질임금상승률	-	-	-0.1	3.8	-2.9	3.1	
	상 용 직	임금총액	2,683	2,802	2,863	3,047	3,019	3,178
		(상승률)	(5.6)	(4.4)	(2.2)	(6.4)	(-0.9)	(5.3)
		실질임금상승률	3.0	-0.2	-0.5	3.4	-4.7	3.0
		정액급여	1,992	2,057	2,139	2,234	2,341	2,470
		(상승률)	(6.3)	(3.3)	(4.0)	(4.5)	(4.8)	(5.5)
		초과급여	166	179	175	196	179	181
	(상승률)	(5.5)	(7.5)	(-2.2)	(12.2)	(-8.4)	(1.0)	
특별급여	526	566	550	617	498	527		
(상승률)	(2.9)	(7.7)	(-2.8)	(12.3)	(-19.3)	(5.8)		
비상용직 임금총액	-	1,052	1,073	1,056	1,215	1,293		
(상승률)	-	(-)	(1.9)	(-1.6)	(15.1)	(6.4)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1,745	1,846	1,852	1,949	2,032	2,104	
	(상승률)	(5.4)	(5.8)	(0.3)	(5.2)	(4.3)	(3.5)	
	실질임금상승률	2.8	1.0	-2.4	2.2	0.3	1.3	
가계동향 조사	전국(2인 이상, 근로자가구)	3,098	3,287	3,280	3,435	3,613	3,838	
	(상승률)	(5.9)	(6.1)	(-0.2)	(4.7)	(5.2)	(6.2)	
	도시(2인 이상, 근로자가구)	3,163	3,383	3,322	3,479	3,670	3,885	
	(상승률)	(6.6)	(7.0)	(-1.8)	(4.7)	(5.5)	(5.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4.7	2.8	3.0	4.0	2.2		
실질GDP상승률	5.1	2.3	0.3	6.2	3.6	2.0		
근로시간 (월)	전체 근로자(5인 이상)	-	176.7	176.1	176.7	176.3	174.3	
	(상승률)	-	(-)	(-0.3)	(0.3)	(-0.2)	(-1.1)	
	상용직	188.4	184.8	184.4	184.7	182.1	179.9	
	(상승률)	(-1.5)	(-1.9)	(-0.2)	(0.2)	(-1.4)	(-1.2)	

주 :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8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2011년 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고 2008년 이후 시계열 연계자료를 재산출함.

3)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가구조사로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임.

4)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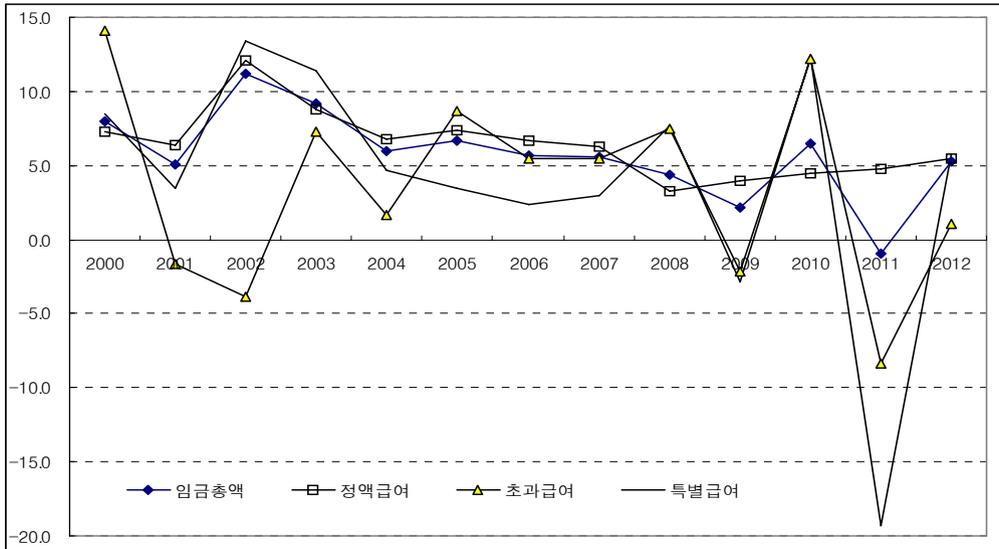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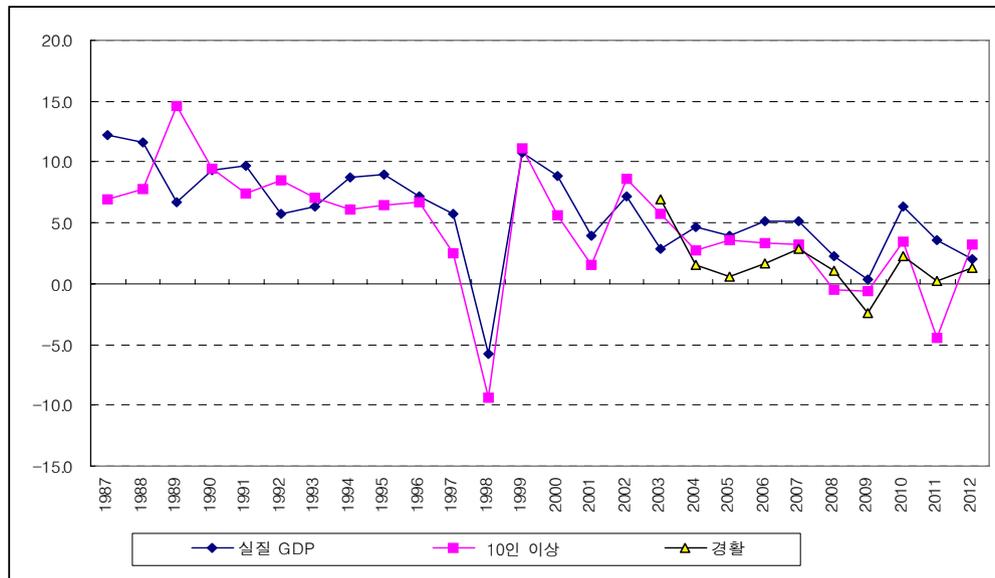
(단위 :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2]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주: 시계열 일치성을 위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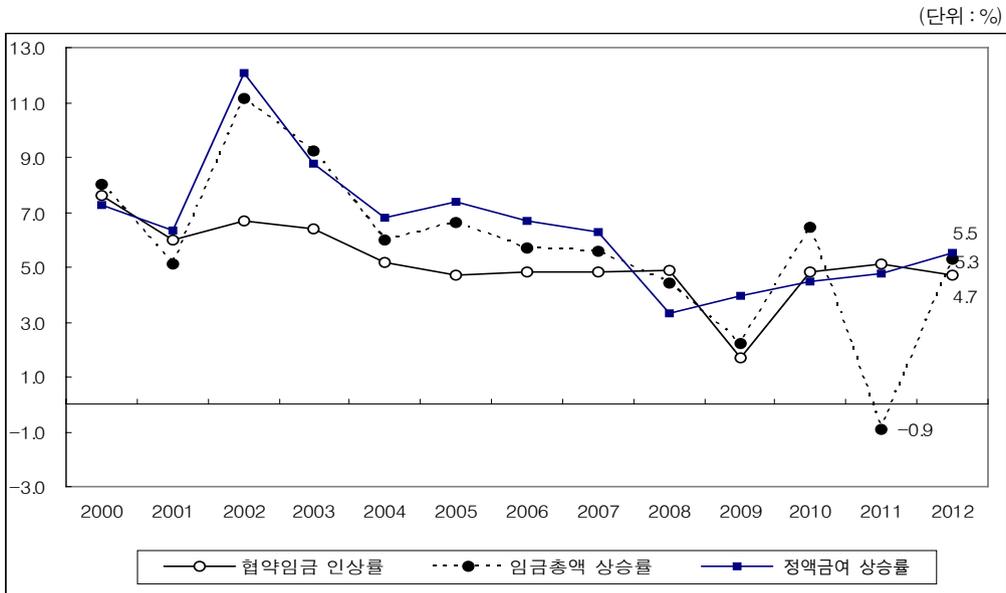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3.1%로 나타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2011년(-2.9%)과 크게 대비된다.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와 명목임금의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체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에서 플러스 증가를 했다.

[그림 2]를 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0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 추세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실질임금 상승률 추세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 두 조사 자료와 실질경제성장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체노동력 조사 자료에서 2012년의 임금상승률이 2011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구분되는 특징이다.

2. 2012년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 소폭 둔화

임금상승률은 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노사관계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림 3]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총액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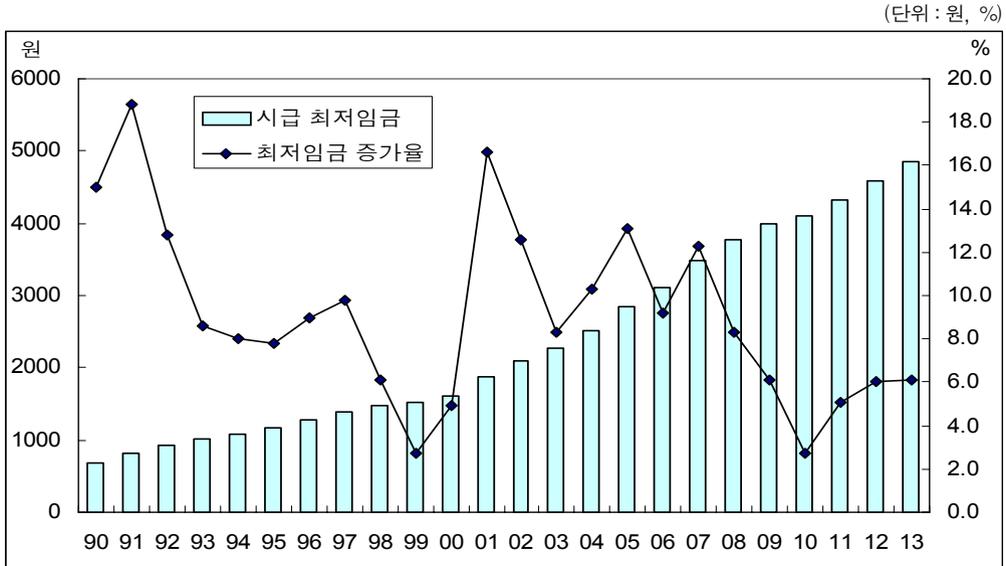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그림 4]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 : e-나라지표, www.index.go.kr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총액기준)은 4.7%로 2011년의 5.1%보다 0.4%p 감소하였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 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도 임금상승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4,86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2012년 대비 6.1% 인상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다 2010년 2.8%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상승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그림 4 참조).

II. 2012년 부문별 임금동향

1. 전 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

면, 모든 규모에서 임금이 증가했는데, 특히 100~29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7.7%로 가장 높았다(표 2 참조).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5%로 2011년의 마이너스 증가에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모에서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 대비 전규모의 임금은 71.8%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2%p 증가하였다.

<표 2> 규모별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300인 이상=100.0)

	2009년 평균		2010년 평균		2011년 평균		2012년 평균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상대 수준	
전규모	2,863 (2.2)	[72.8]	3,047 (6.4)	[71.0]	3,019 (-0.9)	[70.6]	3,178 (5.3)	[71.8]
5~9인	2,115 (2.9)	[53.8]	2,212 (4.6)	[51.6]	2,186 (-1.2)	[51.2]	2,295 (5.0)	[51.9]
10~29인	2,442 (2.4)	[62.1]	2,561 (4.9)	[59.7]	2,562 (0.0)	[60.0]	2,711 (5.8)	[61.3]
30~99인	2,682 (3.4)	[68.2]	2,837 (5.8)	[66.1]	2,864 (0.9)	[67.0]	3,046 (6.4)	[68.9]
100~299인	2,957 (1.0)	[75.2]	3,126 (5.7)	[72.8]	3,113 (-0.4)	[72.9]	3,355 (7.7)	[75.8]
300인 이상	3,934 (0.3)	[100.0]	4,291 (9.1)	[100.0]	4,273 (-0.4)	[100.0]	4,424 (3.5)	[100.0]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상대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2.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임금 상승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12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623천 원으로 2011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8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1.1%,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97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3.6% 증가하여,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다.

2012년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임시직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1년에 비해 0.6%p 감소한 49.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011년에 비해 0.5%p 증가한 37.3%를 기록해 다소 회복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2000년 대 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용형태로 구분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추이는 <표 4>와 같다. 2012년 정규

직의 월평균 임금은 2,460천 원으로 2011년 대비 3.0%,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93천 원으로 2011년 대비 3.3% 상승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수준의 임금상승을 하였다.

〈표 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직	임시직	상대수준	일용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상용직=100)
2000	1,527 (-)	852 (-)	55.8	646 (-)	42.3
2001	1,649 (8.0)	916 (7.5)	55.6	689 (6.7)	41.8
2002	1,769 (7.3)	971 (5.9)	54.9	760 (10.3)	43.0
2003	1,958 (10.7)	1,032 (6.4)	52.7	759 (-0.2)	38.8
2004	2,036 (4.0)	1,080 (4.6)	53.0	779 (2.6)	38.2
2005	2,117 (3.9)	1,102 (2.0)	52.1	783 (0.6)	37.0
2006	2,184 (3.2)	1,139 (3.4)	52.2	814 (4.0)	37.3
2007	2,299 (5.3)	1,163 (2.1)	50.6	823 (1.1)	35.8
2008	2,409 (4.8)	1,212 (4.2)	50.3	875 (6.3)	36.3
2009	2,419 (0.4)	1,170 (-3.5)	48.4	858 (-2.0)	35.5
2010	2,500 (3.4)	1,221 (4.4)	48.8	898 (4.7)	35.9
2011	2,567 (2.7)	1,275 (4.5)	49.7	945 (5.3)	36.8
2012	2,623 (2.2)	1,289 (1.1)	49.1	979 (3.6)	37.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4〉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추이

(단위: 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2003	1,678 (15.3)	1,028 (5.3)
2004	1,771 (5.6)	1,152 (12.0)
2005	1,846 (4.2)	1,156 (0.4)
2006	1,908 (3.4)	1,198 (3.6)
2007	2,008 (5.3)	1,276 (6.5)
2008	2,127 (5.9)	1,296 (1.6)
2009	2,201 (3.5)	1,202 (-7.3)
2010	2,294 (4.2)	1,258 (4.7)
2011	2,388 (4.1)	1,348 (7.1)
2012	2,460 (3.0)	1,393 (3.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Ⅲ. 2013년 임금상승률 전망

1.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2013년 임금인상률은 4.0%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엄밀하게는 경제전체의 근로소득) 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 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된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이론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2013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하여 2013년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2.8%)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2.5%)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3%)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4.0%의 임금상승률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실제 임금상승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론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이외에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임금인상률을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3년 양대노총 요구율 다소 둔화

2013년도 양대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2012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2013년도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생계비 및 근로자 간 격차해소 등을

〈표 5〉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
1998	-25.0	7.2	4.7	-
1999	0.0	7.7	5.5	-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9.3	9.1	5.3
2013	-	8.9	8.1	-

- 주 :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8) 2011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9) 2012년 이후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월 정액임금에 대한 상승률 요구율임.
 10)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 · 민주노총 · 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감안하여 8.1%로 요구하였고, 비정규직은 17.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2013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2년보다 1%p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및 차별 완화를 위해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5,872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임금불평등해소, 노동소득분배구조개선,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인 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동일정액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임금인상 요구율로 환산하면 정규직은 8.9%, 비정규직은 15.7%의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는 2012년 대비 정규직 0.4%p, 비정규직 3.4%p 낮은 수준의 요구안이다. 한편 최저임금 요구액은 5,910원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아직 2013년 임금상승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3. 2013년 임금상승률은 4.5%로 전망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주요 국가의 정책대응 강화,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저조한 3.4%(2012년 10월 3.5% 전망)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당분간 L자형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2012년 10월)에서 2.8%(2013년 1월)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 1).

〈표 6〉 2013년 경제전망

(단위 : %)

		2012			2013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3. 1. 11)	GDP	2.5	1.6	2.0(2.4)	1.9	3.5	2.8(3.2)
	민간소비	1.3	2.2	1.8(1.7)	2.6	3.0	2.8(3.0)
	설비투자	2.2	-5.2	-1.5(1.5)	-5.4	11.2	2.7(5.0)
	건설투자	-0.6	-1.2	-0.9(0.2)	0.8	4.0	2.5(2.9)
	상품수출	3.0	4.2	3.6(3.4)	4.3	6.6	5.5(7.5)
	상품수입	2.2	2.0	2.1(2.4)	2.4	5.6	4.0(6.9)
	소비자물가	2.7	1.7	2.2(2.3)	2.1	2.9	2.5(2.7)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	취업자증가율	1.8			1.3		
	실업률	3.3			3.3		

주 : 1) ()안은 2012년 10월 전망치.

2)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2년 12월호.

2012년의 임금상승률(「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은 5.3%로 성장률 2.0%라는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용직의 정액급여와 2011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선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3년에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되더라도 임금상승률이 2012년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2012년 임금상승률(5.3%)의 기저효과와 저성장 등의 요인이 2013년 임금전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보수 인상의 둔화(2012년 3.9%→2013년 2.8%)도 공공부문과 경제 전반에 임금상승억제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용직의 정액급여가 경기에 상관없이 4년 연속 꾸준히 상승한 추세가 2013년 임금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012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 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6.1%)의 영향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 임금상승률은 4.5%로 전망된다. **KL**

